

안장절차 안내

①개장 → ②화장 → ③안장의 순서로 진행되며, 각 단계별 준비사항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개장해울 분묘가 망월묘지에 있는 경우.

- 가. 망월묘지공원 사무소에 개장신고
 - ※ 구비사항 : ㉠신분증 ㉡도장 ㉢매장묘지사용허가증
 - ※ 신청자가 개장신고를 못할 경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첨부 제출
- 나. 망월묘지공원 사무소에 봉안묘 사용신청(이장 3~4일 전)
 - ※ 구비사항 : ㉠신분증 ㉡도장 ㉢관계를 입증할 서류
- 다. 개장 신고필증을 받은 다음 유골과 개장 신고필증을 가지고 화장장에서 화장
- 라. 화장 마치면 생분해 유골함에 유골을 담아 망월묘지공원에 화장증명서를 제출하고 안장

2. 개장해울 분묘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.

- 가. 묘가 소재한 읍·면·동 사무소에 개장신고
 - ※ 구비사항 : ㉠신분증 ㉡도장 ㉢분묘 사진 ㉣관계를 입증할 서류
- 나. 망월묘지공원 사무소에 봉안묘 사용 신청(이장 3~4일 전)
 - ※ 구비사항 : ㉠신분증 ㉡도장 ㉢관계를 입증할 서류
- 다. 개장 신고필증을 받은 다음 유골과 개장 신고필증을 가지고 화장장에서 화장
- 라. 화장 마치면 생분해 유골함에 유골을 담아 망월묘지공원에 화장증명서를 제출하고 안장

■ 유의사항

- 관계를 입증할 서류 : 개장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가족봉안묘 분양계약자가 고인과의 존비속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또는 족보 등 제출.
 - ※ 관계 입증이 안 되면 개장신고 반려되거나 봉안묘 사용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
- 영락공원 승화원(화장장)에서는 유골을 가져오신 분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화장을 시행합니다.
- 화장 후 이장 전까지 봉안함은 영락공원 추모원에 소정의 사용료 지불하면 임시보관 할 수 있습니다.
- 화장장 이외의 곳에서 개별적으로 화장한 경우 안장 불가합니다.

MEMO